

# 八旗制度의 구조분석을 위한 시론

金斗鉉

- |                   |               |
|-------------------|---------------|
| 1. 문제제기           | 3. 팔기제구조의 재검토 |
| 2. 팔기제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 4. 맺음말        |

## 1. 문제제기

清朝의 중국지배는 이왕의 정치력의 중심체였던 明朝의 붕괴와 그 대체세력으로의 清朝의 성장이라는 두가지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합의 보다 직접적인 양상은 대체세력으로 성장한 청조가 정치의 구심체가 공백상태인 중국에 자신의 통제력을 침투시켜가는 중국정복의 과정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조의 중국지배는 명조의 붕괴, 청조의 성장 그리고 청조의 중국정복이라는 세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규명될 수 있다고 하겠다. 본고는 그 중에서 대체세력으로 성장해가는 청조의 성장이라는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모색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644년 이전 이른바, 入關以前の 清朝社會<sup>1)</sup>를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1) 清朝社會라는 용어는 엄밀하게 따져보면 잘못 사용된 것이다. '大清'의 건국이 1636년의 일이기 때문에 '清朝社會'라고 지칭하는 경우에는 1636년 이후의 사회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入關前時期'는 '後金以前', '後金', '大清' 등의 시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만주족의 흥기에서 청조의 건국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지배에 이르는 사회변화의 흐름을 간과해버릴 위험이 있다. 본고에서는 만주족의 사회가 중국지배의 대체세력으로 변화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清朝社會'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滿洲族<sup>2)</sup>의 흥기에서부터 1644년 入關하기까지의 청조사회는 광범위하게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수렵의 초기단계에서 전제왕조로 발전함으로써 고도의 집중화 과정을 경험하였다. 지배영역도 농경지역으로 확대되어 농경민을 직접적으로 지배하여야 했으며 그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만주족의 흥기에서 1644년의 입관까지의 시기는 대체적으로 세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니 '後金'의 건국과 '大清'의 건국 그리고 1644년 入關이 각 시기의 획기가 된다.

첫번째의 시기는 만주족이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집단에서 하나의 정치체제로 통합되는 과정이다. 이 시기에 관해서는 여러 만주족집단의 존재양태와 통합의 과정이 주된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sup>3)</sup>. 즉 개별분산적인 만주족이 '後金' 왕조라는 하나의 정치집단으로 집중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의 시기이며 따라서 정치적 변화, 경제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영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기 때문에 추론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後金'의 건국에서 입관의 시기는 근거지를 농경지대인 요동지역으로 옮겨서 농경민에 대한 직접지배를 시도한 시기로 '後金'의 건국에서 '大清'의 건국까지의 전반기와 '大清'의 건국에서 입관까지의 후반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조는 명조의 대체세력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그 전반기는 요동지배의 모색의 과정으로 명조에 대하여 대결관

2) 滿洲族이라는 용어는 女眞, 주선 등의 용어와 함께 논란이 많은 것이다. 또한 後金이라는 용어도 만주구룬(Manju Gurun)등의 문제와 더불어 논란이 많은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滿洲族, 後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들에 대한 검토는 蔡美彪, 「大清國建號前的國號族名與紀年」, 『歷史研究』 1987-3 참조.

3) 李健才, 『明代東北』,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86; 楊陽, 『明代奴兒干都司及其衙門研究』, 中州書畫出版社, 1982; 楊陽, 『明代遼東都司』, 中州古籍出版社, 1988 등이 대표적이다.

계를 분명히 하면서 농경민을 직접지배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면서 그에 따른 정치체제의 구축에 힘썼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그러한 시도들의 여러 양태와 그것의 지향점을 규명하려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즉 만주족의 정치집단인 '後金'이 농경민을 포섭하면서 어떠한 정치체제의 왕조로 나아가려고 하였는가하는 문제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요동지배의 후반기는 앞시기의 모색을 기반으로 요동의 지배를 안정화시키는 단계이다. 따라서 태종 홍타이지로의 권력집중화와 '大清'의 표방은 앞시기와의 구분을 지향하는 것이며 한인지배층의 포섭과 그에 따른 여러 방면에서의 새로운 시도의 지향점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과제이다. 즉 앞시기와의 단절점과 연속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와같은 몇단계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는 청조사회의 변화의 실체를 추적하는 작업은 대체세력으로 성장해가는 양상을 밝히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청조의 중국정복의 動因의 한 요소를 규명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청조사회의 변화가 급속하면서도 여러 형태로 이루어진만큼 이에 대한 접근도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접근을 위한 분석의 틀중의 하나로 八旗制度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팔기제는 청조의 군사력의 원천이 되는 조직이며 경제적 기반이 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청조의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장악하는 사회조직이기도 하다. 청조의 군사력은 중국정복의 일차적인 힘이 되었다는 점<sup>4)</sup>에서 청조사회의 규명에 기본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물적자원을 확보하려는 조치는 경제적 변화의 여러 양상에 대응하는 것이니만큼 팔기조직의 변화를 통하여 경제의 질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청조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는 사회조직의 변화를 수반하며 따라서 팔기제도의 변화에는 입관전 청조의 사회변화의 양상이 그대로 투

4) 安部健夫, 『清代史の研究』, 東京, 倉文社, 1971, pp. 59-67. 이하 『清代研究』로 약함.

영되어 있으며 본고는 이러한 팔기제도의 구조를 분석하여 입관전 청조의 사회변화를 추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조직은 북방민족 특히 수렵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의 특징적인 사회조직이며 팔기제의 변화는 만주족의 농경지역으로의 진출에 따른 사회체제의 대응이만큼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북방민족의 농경사회로의 진출의 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2. 팔기제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팔기제도에 관한 연구는 먼저 제도사적인 접근을 시도한 분석을 들 수 있으니 만주족의 수렵관행에서 발전한 일종의 씨족조직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sup>5)</sup>는 팔기제의 기원에 관한 연구와 그러한 조직이 만주사회의 확대와 더불어 지연적인 성격<sup>6)</sup>을 지닌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으로 변화하면서 성립하게 되었다는 성립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인 형태이다. 또한 1旗의 구성 형태, 즉 300명으로 구성된 1니루(niru;牛录)에 1명의 니루어전(niru i ejen;牛录額眞)을 두고 5니루에 1명의 잘란어전(jalan i ejen;甲喇額眞)을 두었으며 다시 5잘란에 1명의 구사어전(gūsa i ejen;固山額眞)을 설치하여 1구사(gusa;旗)를 구성하였다<sup>7)</sup>는 旗의 구성과 4旗의 성립과 8旗로의 발전<sup>8)</sup>, 그리고 漢人八旗의 성립<sup>9)</sup>과 蒙古八旗의 성립<sup>10)</sup>등 八旗의 성립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제도 자체에 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논의가 정리되어 가고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제도의 외형적인 형태의 성립에 관한 분석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팔기제의 기원에 관해서 팔기조직의 기본

5) 팔기제와 씨족제와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中山八郎, 「明末女直と八旗的統制に關する素描」, 『歴史學研究』 5-2, 1935 참조. 三田村泰祖는 구사(gūsa;旗)의 기원을 元代에 있다고 하였다(『初期滿洲八旗の成立過程』, 『清朝前史の研究』, 京都, 東洋史研究會, 1972, pp.290-303. 이하 「前史研究」로 약함).

단위인 니루가 수렵관행인 씨족조직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있을뿐이니 이 주장의 유일한 근거는

太祖는 모아들인 무리들을 300명씩 나누어 牛录額眞을 세워 그들을 관할하게 하였다. 이전에는 전쟁에 나가거나 사냥을 갈 때에 사람수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아니하고 族寨에 따라서 행하였다. 滿洲人이 사냥을 가서 포위를 할 때에는 각기 화살 하나를 제비뽑기해서 10명중에 1명의 總領을 세워 나머지 9명을 관할하게 하여 각각의 방향을 맡아 헛갈리지 않게 하였다. 이 總領을 牛录(漢語로 大箭의 의미) 額眞(漢語로 主의 의미)이라고 불렀으니 이렇게 해서 牛录額眞이 官職名으로 되었다.<sup>11)</sup>

- 
- 6) 八旗制의 지연성은 촌락제의 해명과 연관되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江島壽雄, 「明末滿洲におけるガシヤンの諸形態」, 『史淵』 32, 1944; 周藤吉之, 「清代前期における八旗の村落制」, 『清代東アジア史研究』, 東京, 日本學術振興會, 1972 등 참조. 가산(gasan)을 지연적 결합, 무쿤(mukūn)을 종족적 결합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鴛淵一·戶田茂喜, 「ジュセンの一考察」, 『東洋史研究』 5-1, 1939) 이와는 달리 사유재산목록이라든가(安部健夫, 「滿洲八旗ニルの研究」, 『清代研究』) 貢勅制와 연관하여 이해하기도 한다(三田村泰祖, 「ムクン・タタン制の研究」, 『前史研究』).
- 7) 旗田巍, 「滿洲八旗の成立過程に關する一考察」, 『東亞論叢』 2, 1940; 陳文石, 「滿洲八旗牛录의構成」上·下, 『大陸雜誌』 31-9·10, 1965.
- 8) 周遠廉, 「清代前期的八旗制度」, 『社會科學輯刊』 1981-6; 三田村泰祖, 「初期滿洲八旗의成立過程」; 石橋崇雄, 「八gūsa와 八gūsa色別との成立時期について--清祖八旗制度研究の一環として」, 『中國近代史研究』 3, 1983.
- 9) 劉家駒, 「清初漢軍八旗의肇建」, 『大陸雜誌』 34-11·12, 1967; 阿南惟敬, 「漢軍八旗成立의研究」, 『清初軍事史論考』, 東京, 申陽書房, 1980(이하 「軍事史」로 약함); 陣佳華·傅克東, 「八旗漢軍考略」,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編, 『滿族史研究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8.
- 10) 阿南惟敬, 「天聰九年의蒙古八旗成立について」, 『軍事史』.
- 11) 『大清滿洲實錄』, 臺北, 華文書局 影印本, 1964, p.115의 b의 太祖將所聚之衆每三百人內立牛录額眞管屬 前此 凡遇行師出獵不論人之多寡 照依族寨而行 滿洲人出獵 開圍之際 各出箭一枝 十人中立一總領 屬九人而行 各照方向 不許錯亂 此總領呼爲 牛录(漢語大箭)額眞(漢語主也) 於是 以牛录額眞爲官名. 「清太祖武皇帝實錄」, 「太祖高皇帝實錄」, 「大清太祖高皇帝實錄」 등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있다.

라는 진술이다. 그러나 이 진술도 자세히 분석해보면 ‘참가인원의 多寡가 아닌 族寨에 따른 사냥’에서 ‘10명중에서 1명의 總領을 뽑아서 행한 사냥’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즉 수렵관행인 씨족조직이 어떠하였으며 그것이 어떻게 니루조직으로 개편되었는가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수렵단계에 있던 만주족의 조직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추론의 여지가 있는 앞의 인용자료를 비롯한 몇몇 자료도 후대의 것이기때문에 신빙성에서 의심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론이 요구되지만 인류학적인 접근방법에 의해서 재구성한 씨족형태에 관한 연구결과<sup>12)</sup>가 있을 뿐이며 이것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팔기제의 구조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논의는 훨씬 복잡해진다. 우선은 팔기제의 기본단위인 니루(niru; 牛乳)의 구성원이 어떤 집단인가하는 것부터 문제가 된다. 통설과 같이 팔기제도가 만주족의 사회조직이자 군사조직이라면 니루의 구성원 300人是 그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일반민인 만주족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들은 병력의무의 담당자인 甲士(uksin i niyalma; 갑옷의 사람)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기되는 의문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니루의 甲士의 수가 50명에서 100명, 그리고 150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을뿐 甲士의 수가 300명이 아니니<sup>13)</sup> 1니루의 구성원 300人이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가하는 점이다.

뿐만아니라 奴隸(aha; 阿哈)신분은 분명히 아닌데도 甲士가 아닌, 다시 말해서 병역의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 계층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집단이

12) S.M. Shirokogoroff, *Social Organization of the Manchus; A Study of the Manchu Clan Organization*, Shanghai, 1924; S.M. Shirokogoroff, *Social Organization of the Northern Tungus*, Shanghai, 1933.

13) 阿南惟敬, 「清初の甲士に關する一考察」, 『軍事史』

있으니 이르겐(irgen; 伊爾根)과 바이신 니얄마(baisin niyalma; 白身)가 그러한 예이다. 이들도 니루의 구성원이라면 군사조직의 기능을 지닌 니루에서 이들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가? 이들이 니루의 구성원이 아니라면 사회조직의 성격을 지닌 니루라는 견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상과 같은 의문이 제기되면서 팔기제도의 기능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제기된 것이 니루의 養兵母體說<sup>14)</sup>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니루는 隸農인 주선(jušen; 諸申) 300명과 일정한 토지가 결합된 것을 지칭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의 주선은 니루를 구성하는 300인의 丁男으로 그들의 사회적 신분은 私的 奴隸인 아하와는 구별되는 제3의 신분인 公的 奴隸 곧 隸農이며 그들은 울지(olji; 捕虜)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니루의 구성원(niru i haha; 니루이 하하, 牛畝의 남자)인 주선은 자유민으로 구성된 병사인 甲士와는 사회적 신분이 다르게 된다. 이러한 주선과 토지(우신; usin)가 결합된 특소(tokso; 拖克索, 屯莊)가 니루의 실체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특소인 니루는 甲士에게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養兵母體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정된 니루는 통설에서 주장하는 만주족 300인을 단위로 편성한 군사조직이자 사회조직과는 전혀 다른 조직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니루의 養兵母體說은 많은 반론을 불러일으켰으니 우선은 니루이 하하가 甲士와는 사회적 신분이 다른 주선인 隸農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1니루 50명의 甲士(uksin)에서 10명의 甲士를 城을 지키게 두고 40명의 甲士(uksin i niyalma)를 뽑아서 보냈다”<sup>15)</sup>는 서술에 보듯이 니루이 하하 중에서 몇명의 甲士를 차출한다는 여러 기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sup>16)</sup>. 뿐만아니라 니루이 하하가 주선이라는

14) 安部健夫, 「八旗滿洲ニルの研究」.

15) 『滿文老檔』1, 滿文老檔研究會譯註, 東京, 東洋文庫, 1955, p. 85.

16) 阿南惟敏, 「清初の甲士に關する一考察」.

근거는 무엇이며 주선과 甲士가 별개의 신분으로 파악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sup>17)</sup>.

나아가서 주선과 토지가 결합된 특소가 곧 니루의 실체라는 주장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滿文老檔』에

영거더 어푸(Enggeder Efu)와 망굴다이(Manggudai)에게 각각 일곱명의 남자 女真人(jusen)(으로 구성된) 특소(tokso)를 두개씩, 각각 열명의 남자 漢人(nikan)(으로 구성된) 특소(tokso)를 두개씩 …… 낭눅(Nangnuk), 만주시리(Manjusiri), 다이칭(Daicing), 바트마(Batma)에게 각각 네명의 女真人(jusen)(으로 구성된) 특소(tokso)를 하나씩, 각각 열명의 남자 漢人(nikan)(으로 구성된) 특소(tokso)를 하나씩 …… 먼두 다간(Mendu Dagan)에게 각각 세명의 남자 女真人(jusen)(으로 구성된) 특소(tokso)를 하나씩, 각각 열명의 남자 漢人(nikan)(으로 구성된) 특소(tokso)를 하나씩 … (賜與한다).<sup>18)</sup>

는 기록이 있으니 여기에 따르면 특소는 女真人 또는 漢人으로 구성되고 그 숫자는 7명, 10명, 4명 등으로 각기 규모가 달라 일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특소는 특정인에게 사여될 정도로 사적인 연속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적어도 이 기록에서 서술하고 있는 특소는 養兵母體說에서 주장하는 니루의 실체인 특소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하다면 양자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특소인가 아니면 양병모체설의 특소개념이 잘못된 것인가?

이상과 같은 반론의 제기에 의해서 養兵母體說은 여러면에서 설득력을 상실하였지만 니루이 하하 300명의 실체는 여전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17) 石橋秀雄, 「清初のジュシエン Jušen--特に天命期までお中心として」, 『清代史研究』, 東京, 綠蔭書房, 1989(이하 『清史研究』로 약함); 石橋秀雄, 「清初の社會--とくにジュシエンについて」, 『清史研究』.

18) 『滿文老檔』 2, pp.908-909.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는 입관전 청조사회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이다. 입관전 청조사회의 신분관계를 표현한 용어로 짐작되는 것으로 한(han; 汗), 버일러(beile; 貝勒), 암반(amban; 大臣), 이르겐(irgen; 伊爾根), 주선(jušen; 諸申), 아하(aha; 阿哈) 등이 있다. 니루이하하와 일차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피지배층인 이르겐, 주선, 아하 등의 신분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선을 주목한 연구가 많은데 이러한 연구경향은 주선을 청조사회의 기본계층 설정하고 있기때문이 아닌가 한다. 주선에 대해서 自由民의 몰락이라는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으니 주선에 대한 여러 기록에서 그 의미를 추출해서 주선이 女眞族·女眞人·部民·平民·兵士·手下 등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선의 의미 변화를 청조사회의 변화와 연결시켜 신분상의 구분이 없는 단순한 女眞族으로 인식되었던 사회로부터 예측성이 강한 手下로 인식되는 사회로의 변화 즉, 자유민의 몰락과정을 주선의 신분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9)</sup>. 이러한 이해는 청조사회의 변화와 사회신분의 변화를 연결하여 파악하려는 것으로 시사점이 주는 바가 많지만 구체적인 분석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주선의 自由民沒落說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토지를 공유한 자유로운 씨족구성원인 주선이 청조사회가 노예제사회로 진입하면서 平民으로 몰락하고 봉건사회로의 이행기에는 봉건세력에 依附된 농민으로 몰락하였다<sup>20)</sup>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노예점유제 국가의 평민’이라든가 ‘봉건세력에 依附된 농민’ 등의 개념이 보다 분명해져야 설득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만주족의 종족투쟁과정에서 領主氏族에게 예속된 씨족의 구성원이 주선이며 이들은 어느 정도의 자유를 향유하며 노비와 가축 등의 재산도 가질 수 있어 생활상태는 領主氏族員과 그다지 차이가 없었다<sup>21)</sup>

19) 駕淵一·戶田茂喜, 「ジュセンの一考察」.

20) 周遠廉, 『清朝開國史研究』,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81.

21) 三田村泰祖, 「滿洲國成立過程の一考察」, 『前史研究』, pp. 478-479.

는 隸屬民族說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는 한편 니루이 하하 300명은 軍務수행에 필요한 잡역을 포함한 병역의무(步兵)를 지닌 一般壯丁으로, 甲士는 니루이 하하와는 구별되는 전문군인으로 설정함으로써<sup>22)</sup> 甲士인 주선과 一般壯丁인 니루이 하하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만주족의 통일의 진전과 통치조직의 수립, 특히 관료조직의 확립 등과 연결하여 주선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니 이르건은 구룬(gurun; 國)의 長인 한(han; 汗)에 대응되는 관계의 표현이고 주선은 아이만(aiman; 部族)의 長인 버일러(beile; 貝勒)에 대응되는 관계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만주족이 통합되고 관료조직이 확대되어가면서 버일러와 주선의 관계가 다양한 모습을 지니게 되지만, 부족장인 버일러와 그 구성원인 주선과의 주종관계라는 본래적인 의미가 내포된 용어가 주선이라는 것이다<sup>23)</sup>. 청조사회의 변화를 고려한 점에서 주목되는 바이지만 니루등과의 관계속에서 주선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의미하는가하는 점이 규명되어야 보다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이들 신분에 대한 분석은 앞에서 소개한 養兵母體說이 있으니 그에 의하면 청조사회의 피지배층은 자유민인 甲士, 공적 노예에 해당되는 隸農인 주선, 그리고 사적 奴隸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sup>24)</sup>. 하지만 이 견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료검토에서 많은 반론이 제기되어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원시공통체사회에서 노예제사회, 그리고 농노제사회로의 발전을 상정하여 주선과 이르건의 사회적 신분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으니 앞에서 언급한 자유민몰락설 외에도 女眞族의 범칭으로서의 주선이 계급분화의 과정에서 노예로 전락하였다는가<sup>25)</sup> 주선을 자유민

22) 三田村泰祖, 「初期滿洲八旗の成立過程」. 이 견해에 따르면 니루는 民兵組織이 된다.

23) 石橋秀雄, 「清初のイルゲン Irgen--特に天命期までお中心として」, 『清史研究』; 石橋秀雄, 「清初のジュシエン Jušen--特に天命期までお中心として」; 石橋秀雄, 「清初の社會--とくにジュシエンについて」; 石橋秀雄, 「ジュシエン小考」, 『清史研究』; 石橋秀雄, 「清初のアハ Aha」, 『清史研究』.

24) 安部健夫, 「八旗滿洲ニルの研究」.

25) 鄭天挺, 「清入關前滿洲族的社會性質」, 『清史論叢』(香港) 1, 1977.

으로, 아하를 노예로 설정하기도<sup>26)</sup> 하였다.

이들의 신분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것은 곧바로 입관전 청조사회의 발전단계와 연결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전반적인 변화의 틀속에서 파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분석은 병역의 부담여부라든가<sup>27)</sup> 예속성의 정도문제<sup>28)</sup> 등 일면적인 성격을 기준으로 행하여진 것 같다. 또한 이르진, 주선, 아하 등 피지배층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이들을 장악하였던 한, 버일러, 암반 등 지배층의 성장이라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동일하게 지칭되는 한이라도 그 사회의 성장과정에 따라서 한의 의미가 변화하였을 것이며, 그에 따라서 지배대상도 그 의미가 변화하였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고려되면서 팔기의 기본단위인 니루의 구성원과 그 기능문제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팔기제의 편성대상인 니루이 하하 300인과 상관관계가 있으니만큼 이것과의 연결선상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각 시기에서의 감사의 수를 추적하여 니루이 하하 300인의 양태에 접근한다든가 니루이 하하의 병역의 의무정도를 추적하는 것도 이들 신분을 파악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팔기제도도 단순한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입관전 청조사회의 구조적인 형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팔기제도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입관적 청조사회의 발전양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관전 청조사회를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그 발전법칙을 적용하려 할 때 팔기제도를 근거로 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후금의 건국을 봉건사회로의 진입으로 파악한다거나<sup>29)</sup> 태종 홍타이지시대를 봉건사회로 파악하기도 하고<sup>30)</sup> 후금의 건국을 노예제사회 단계, 遼東進出 이후를 봉건

26) 藤紹箴, 「入關前滿族的社會經濟概論」, 『中國史研究』 1982-1.

27) 駕淵一·戶田茂喜, 「ジュセンの一考察」의 경우 청조의 사회변화와 연결하여 이해하려고 하였지만 주선을 병역의 부담이라는 한 측면에서만 파악하였다.

28) 安部健夫, 「八旗滿洲ニルの研究」.

제사회로의 이행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sup>31)</sup>. 이러한 도식적인 적용은 명쾌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의 적용에는 무리가 따를 뿐만아니라 니루이 하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도 않는 등 팔기제에 대한 이해도 지극히 피상적인 상태에서 그것을 근거로 발전법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팔기제도의 구조는 보다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하느니만큼 발전법칙의 적용에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는 다르게 국가의 구조와 그 발전단계와 연관하여 팔기제도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앞에서 언급한 니루의 養兵母體說을 주장한 연구<sup>32)</sup>로 청조의 중국정복의 動因에 대한 분석의 한 틀로 팔기제도를 상정하고 청조의 정치권력과 팔기제도와와의 관계를 해명하려는 시도였다. 비록 이러한 시도는 완결되지 못하였고 개별적인 분석에 대한 여러 형태의 반론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세밀한 자료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입관전 청조사회의 구조를 구축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팔기제를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지는 아니하고 소위 族籍表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청조의 사회 변화 즉 二巨頭制에서 통일적 三巨頭體로의 변화와 청조사회의 발전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청조사회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접근하려한 시도<sup>33)</sup>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9) 봉건제사회로의 이행단계나 진입단계나 등의 논란은 있지만 후금건국 이후를 봉건제사회로 파악한 논문은 莫東寅, 『滿族史論叢』, 北京, 人民出版社, 1958; 鄭天挺, 「清入關前滿族的社會性質」; 藤紹箴, 「清入關前滿族的社會經濟概論」 등이 있다.

30) 李旭, 「論八旗制度」, 『清史論叢』(香港)4, 1978.

31) 周遠廉, 『清朝開國史研究』; 周遠廉, 「關於1587-1621年滿族的社會性質問題」, 『民族史論叢』, 1980; 周遠廉, 「關於16世紀40-80年代初建州女真和早期滿族的社會性質問題」, 『清史論叢』(北京)1, 1979.

32) 安部健夫, 「八旗滿洲ニルの研究」.

33) 三田村泰祖, 「ムクン・タタン制の研究」, 『前史研究』. 물론 『滿文老檔』의 이 자료가 과연 族籍表인지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 3. 팔기제구조의 재검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팔기제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팔기제도의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는 입관전 청조의 팔기제도에 관한 자료가 지극히 미비한 것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료의 문제는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현존하는 자료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또다시 주목되는 것은 『舊滿洲檔』과 『滿文老檔』이라는 방대한 양의 자료이다<sup>34)</sup>. 이 자료는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이 자료를 이용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sup>35)</sup>. 그러나 지금까지는 자료에서 서술된 내용의 문면만을 분석하는데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앞에서 언급한 사회계층에 대한 연구들이 이르건이라든가 주선이라는 용어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만을 검토하고 있을뿐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이들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 부분을 분석하지 않은 연구가 대표적인 예이다<sup>36)</sup>.

그리고 보다 중요한 점은 이 자료들의 중요성이 일찍부터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이용한 연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인것으로 짐작된다. 더구나 일차사료의 성격이 강한 『舊滿

34) 『舊滿洲檔』1-10, 國立故宮博物院, 臺北, 1969; 『滿文老檔』1-7, 滿文老檔研究會譯註, 東洋文庫, 東京, 1955-1963; 『舊滿洲檔--天聰九年』1-2, 東洋文庫清代史研究室譯註, 東洋文庫, 1972·1975; 『滿文老檔』上·下, 中國第一歷史檔案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譯註, 中華書局, 1990.

35) 이 자료에 대해서는 陳捷先, 「舊滿洲檔述略」, 『舊滿洲檔』1; 三田村泰祖, 「滿文太祖老檔の編纂」, 『前史研究』; 神田信夫, 「清朝興起史の研究--序說『滿文老檔』から『舊滿洲檔』へ」, 『明治大學人文科學研究所年報』20, 1978 등을 참조.

36) 주 23)의 石橋秀雄의 논문.

洲檔』의 경우에는 최근의 연구<sup>37)</sup>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바와 같이 『舊滿洲檔』이 최초의 기록이후 많은 첨삭이 가해졌기 때문에 앞뒤의 맥락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舊滿洲檔』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자료로 인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입관전 청조사회가 급격하게 팽창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면에서 급속하게 변화되어 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팔기제도 역시 청조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되어 갔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자료를 재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팔기제도의 구조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 팔기제도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몇가지의 접근방향에 대하여 정리해보기로 한다. 팔기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기제도의 성립과 그 변화가 지닌 정치적 의미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팔기제도의 성립은 고립분산적인 만주족의 여러 집단이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즉 팔기제도의 성립이 후금의 건국 전체인 1615년이라는 사실은 후금이라는 정치체제의 성립을 준비한 것이며 또한 편으로는 누르하치의 지배력의 확립의 주요 수단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팔기제의 성립과 후금의 건국 그리고 누르하치의 정치적 세력의 확립이라는 관계속에서 그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滿文老檔』 萬曆43년인 1615년의 기록<sup>38)</sup>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은 수렵관행에서 비롯한 씨족조직을 정치조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그 매개체로 팔기제도를 성립시키고 있으며 누

37) 細谷良夫, 「『滿文原檔』 '黃字檔' について--その塗改の検討」, 『東洋史研究』 49-4, 1991에서 原檔의 첨삭을 塗抹, 塗改, 削除, 加筆 등으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38) 『滿文老檔』 1, pp. 50-66.

르하치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력을 확대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사냥할 때에 한 니루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화살을 주어서 가게 하였다. 한이 이르기를 “한 니루의 사람이 한 곳에 가면 어떤 니루의 사람도 (그가) 되돌아 집에 올 때까지 사냥터에 가지 못한다”고 하여 열 니루를 모아 서 (그들에게) 하나의 화살을 주어 (사냥을) 가게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한 번의 사냥에 한 니루의 사람이 두세번 사냥터에 들어갈 수 있었다.<sup>39)</sup>

라고 한 데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같이 수렵지의 사용을 둘러싼 분쟁의 여지를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sup>40)</sup>도 있었던 만큼 개별적인 만주족의 각각의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의 조정자로서의 존재와 전체 만주족의 통합된 정치체의 최고 권위자라는 두 양태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후금의 건국은 전자로 부터 후자로의 이행의 과정이며 팔기제도는 이러한 배경에서 성립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되는 것은 버일러, 구사어전(gūsa ejen; 旗의 長)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팔기제배층의 정치적인 체관계이다. 그들의 정치적인 세력은 팔기제의 구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누르하치 역시 몇개의 구사를 직접 관할하고 있었다<sup>41)</sup>. 이러한 면에서는 후금이라는 정치집단은 각기의 구사를 기반으로 한 세력집단의 연합체라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추정될 수 있겠다<sup>4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기제의 편성이라든가 구사의 임면에는 누르하치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팔기 전체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39) 『滿文老檔』 1, p. 51.

40) 金浩東, 「古代遊牧國家의 構造」, 『강좌 중국사』 2, 지식산업사, 1989, pp. 271-272에 따르면 유목지의 우선적 사용권을 둘러싼 분쟁의 조정이 유목군주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라고 한다.

41) 駕淵一, 「清初の八固山額眞に就いて」, 『山下先生遷曆記念東洋史論文集』, 六盟館, 東京, 1938; 李鴻彬·郭成康, 「清入關前八旗主旗貝勒의 演變」, 『社會科學戰線』 1982-1.

행사하였다. 그러하다면 팔기제라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가하는 것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팔기 지배층으로 등장하는 버일러<sup>43)</sup>와 구사어전은 정치적 제관계에서 어떠한 존재이었는가도 규명되어야 이 문제가 보다 명백해질 것이다. 다시말하여 팔기제를 둘러싼 한과 버일러, 구사어전 등의 세력관계의 규명이 팔기제도의 정치적 성격을 이해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팔기제의 정치적 측면에서 이후의 청조사회의 변화의 단면을 추적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는 누르하치 만년의 八王合議制 구상<sup>44)</sup>이 될 것이다. 팔왕합의제를 제안한 청조의 상황은 통치의 근거지를 요동지역으로 옮겨 漢人의 지배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요동의 지배를 모색한 시기이고<sup>45)</sup> 명과의 관계에서도 질곡상태에 놓인 시점<sup>46)</sup>에 있었던 시기이다. 이 시점에서 제기된 팔왕합의제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은 당시의 팔왕의 정치적 세력관계는 어떠한가가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팔왕과 팔기제의 관계의 규명이 필요할 것이며 후금건국 당시의 팔기를 중심으로 한 제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의 분석이 시사점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서 팔기제를 중심으로 한 지배층의 관계가 드러날 것이고 또한 팔기

42) 三田村泰祖, 「ムクン・タタン制の研究」에서 二巨頭制로부터 三巨頭制로의 이행을 주장하는 데에서도 연합체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무쿰 타탄제에 기반을 둔 이러한 정치체제는 팔기제의 성립에 의해서 일원적인 체제로 변모되었다고 주장하였다(pp. 274-275). 그러나 무쿰 타탄제의 기반이 되는 族籍表의 연대비정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安部健夫, 「八旗滿洲ニユルの研究」), 팔기제의 성립에 의해 일원적인 체제가 구축되었다는 주장은 재검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F. Michael, *The Origin of Manchu Rule in China, Frontier and Bureaucracy as Interacting in the Chinesw Empire*, The Johns Hopkins Press, 1942에서는 팔기제가 봉건제에서 관료제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한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점도 보다 엄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3) 神田信夫, 「清初の貝勒について」, 『東洋學報』 40-4, 1958.

44) 周遠廉, 「後金八和碩貝勒“共治國政”論」, 『清史論叢』 (北京) 2, 1980.

45) 金斗鉉, 「遼東支配期 누르하치의 對漢人政策」, 『東洋史學研究』 25, 1987.

46) 孫文良, 『明清戰爭史略』,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86.



제의 정치적의미가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입관전 청조사회의 또하나의 획기는 태종 홍타이지의 지배기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요동지배의 안정기이다. 이를 위한 조처로는 심양천도<sup>47)</sup>와 대한인정책의 변화가 시행되었으니 이러한 변화는 팔왕합의제를 폐기시키면서 홍타이지 일인지배를 관철시켜나가는 지배력의 장악<sup>48)</sup>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홍타이지시기의 정치적 양태의 규명을 위해서는 팔왕지배체제를 불식시키면서 권력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의 팔기제를 중심으로 한 세력관계와 그 변화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규명된다면 누르하치시기의 세력장악을 위한 팔기제의 정비와 홍타이지의 세력장악 과정에서의 팔기제가 대비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청조의 사회 변화의 한 면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상은 팔기제의 구조를 이해하위한 정치적 측면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직접적인 팔기제의 구조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팔기제의 기능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公的 負擔이라는 알반(alban)의 문제에 대한 규명에서 출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병역과 노동력 그리고 물질 자원의 부가, 즉 알반의 확보가 니루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더불어 감사의 수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니루를 통한 알반의 부가도 청조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公的 負擔인 알반은 니루의 구성원만이 아니라 비구성원에게도 부과되고 있었다<sup>49)</sup>.

47) 戶田茂喜, 「清太祖の都城遷移問題」, 『史學研究』 8-3·9-2·10-1·2, 1937-38.

48) 홍타이지의 권력장악에 대해서는 三田村泰祖, 「清の太宗の即位事情とその君主權確立」, 『東洋史研究』 6-2, 1941; 三田村泰祖, 「再び清の太宗の即位事情について」, 『東洋史研究』 7-1, 1942; 陳文石, 「清太宗時代的重要政治措施」, 『史語所集刊』 40上, 1968 등 참조.

49) 1621년을 전후한 알반의 부가에 대해서는 金斗鉉, 「遼東支配期 누르하치의 對漢人政策」, pp.86-97 참조. 이 논문에서는 니루이 하하와 漢人の 경우를 분석하였지만 여기에서의 漢人은 니루의 비구성원이다.

그러므로 일단은 일반의 부가가 니루 구성원인 니루이 하하와 비구성원 사이에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었는가가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노동력이라든가 물적 자원 보다는<sup>50)</sup> 병역의 부가가 문제될 것이다. 병역의 담당은 단순한 의무일뿐만 아니라 “軍卒은 …… 出兵하여 나갈 때에는 기뻐하여 뛰며 좋아하지 않는 者가 없고 그 아내와 자식도 역시 모두 즐거워하며 오로지 재물을 많이 얻을 것만을 바란다”<sup>51)</sup>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富의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었고 甲士라는 신분 자체가 일종의 특권층인 측면<sup>52)</sup>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니루의이 하하와 니루의 비구성원은 일반의 부담자인 점에서 는 같지만 국가권력측에서는 니루이 하하를 보다 중요한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니루조직은 일반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되는 것이다. 즉 니루는 보다 효율적인 노동력과 물적 자원, 그리고 병역의 확보를 위한 조직이었던 것이다.

니루를 통한 병역의 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니루이 하하 300명 중에서 50명, 100명, 150명 등과 같이 특정 시기에 특정수의 인원이 병역차출의 대상이 되며<sup>53)</sup> 이것이 니루를 통한 병역부가의 실체이다. 그리고 다음의 자료

㉠ 18일에 廣寧으로 군대가 갈 때에 1니루에서 50명씩의 甲士(uksin)을

50) 확인된 바에 의하면 요역과 물자의 납부부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 같다 (金斗鉉, 「遼東支配期 누르하치의 對漢人政策」). G. Roth, “The Manchu-Chinese Relationship, 1618-1636”, J.D. Spence & J.E. Wills, Jr, ed., *From Ming to Ch'ing; Conquest, Region and Continuity in Seventeenth-Century in China*, Yale Univ. Press, 1977 참조.

51) 李民煥, 「建州聞見錄」, 「紫岩集」 卷6(서울대 奎章閣本), p.5의 뒤의 軍卒 … 行出兵之時 無不歡躍 其妻子亦皆喜樂 惟以多得財物爲願.

52) 阿南惟敬, 「清初の甲士の身分について」, 「軍事史」.

53) 阿南惟敬, 「サルフ戰前後の滿洲八旗の兵力について」, 「軍事史」; 阿南惟敬, 「清初の甲士に關する一考察」; 阿南惟敬, 「清初の甲士の身分について」; 阿南惟敬, 「八旗滿洲國初ニルの研究」, 「軍事史」.

(뽑아서) 도비 어치커(Dobi Ecike), 보이호치 어치커(Boihoci Ecike), 사진(Sajin), 수바하이 구부(Subahai Gufu)에게 맡겨 遼陽城을 지키도록 머물게 하였다. 그리고 1니루에서 100명씩의 甲士(uksin)을 (뽑아서) 이끌고 한이 巳時에 출발하였다. (1622년 1월 18일)<sup>54)</sup>

㉠ 初4일에 바두리(Baduri)總兵官이 1니루의 5명씩의 甲士(uksin)을 이끌고 義州路의 보이곤(boigon)을 처리하게 보냈다. (1622년 2월 4일)<sup>55)</sup>

에서 알 수 있듯이<sup>56)</sup> ㉡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기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수의 병사를 차출하여 군대를 편성하였다. 즉 300명의 니루이 하하 중에서 일정수가 병역부가의 대상이 되고 상황에 따라 그중에서 몇명을 차출하여 군대를 편성하였으며 이들의 군비는 니루이 하하가 공동으로 부담하였던 것이다. 그러하다면 니루조직 자체가 군사조직이라는 통설은 재검토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니루는 입관전 청조의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조직이지 군사조직 자체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니루가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기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층의 정치적 세력이 확보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니루의 기능을 파악하는 데에는 알반의 부과형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니루구성원인 니루이 하하와 비구성원에 대한 알반부가의 구체적인 양태, 그리고 청조의 사회변화

54) 『滿文老檔』 2, pp. 491-492.

55) 『滿文老檔』 2, p. 513.

56) ㉠과 ㉡는 天命7년 1월과 2월의 記事이다. 그런데도 ㉠의 경우는 각 니루에서 150명씩, ㉡의 경우는 각 니루에서 5명씩 차출하였다. 이런 양상은 廣寧出兵과 義州路出兵이라는 전투상황의 차이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阿南惟敬은 ㉠의 기사에 근거하여 天命6년 말경부터 각 니루에서 150명씩 선발하였다고 하였다(阿南惟敬, 「清初の甲士に關する一考察」, pp. 190-191). 이 주장을 수용한다면 天命7년(1622)에는 각 니루에서 150명이 병역을 담당하였고 전투상황에 따라 각 니루에서 병역담당 대상자 150명중 몇명을 차출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에 따른 알반의 변화가 정리되어야 할 것이며 원활한 알반의 부가를 위한 관리조직과 체제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팔기제의 니루조직의 기능에 대한 정리를 기반으로 하여 니루이 하하의 사회적 신분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니루이 하하의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는 매우 논란이 많은 상태이다. 앞에서 니루의 기능에 대한 접근을 알반을 중심으로 하여 규명을 시도한 것처럼 니루이 하하의 신분에 대해서도 알반의 담당자인 알반이 니알마(alban i niyalma; 公課의 사람)에 대한 분석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알반이 니알마는 일단은 병력, 요역, 물적 자원 貢納의 부담자이다. 자료에서 이들의 구체적인 생활양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에서 유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여러 사람을 먹고고자 한다면 耕地를 경작하는 가난하고 걱정 많으며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사람을 먹이지 아니하는가? 城을 쌓는 나무와 흙과 돌을 나르는 가난하고 걱정 많은 사람을 먹이지 아니하는가? 인삼을 (캐고) 담비와 灰鼠를 잡으러 나가서 두세달을 돌아다니는 사람을 먹이지 아니하는가? …… (너희와) 같은 (신분이) 좋은 사람이 아낌없이 먹는 것보다는 (신분이) 낮은 알반을 맡아 걱정 많고 고생하는 사람(= alban weileme joboro suilara niyalma)을 먹이라는 것이다<sup>57)</sup>.

여기에서 보면 알반을 담당하는 알반이 니알마는 농사도 짓고 築城에 동원되며 狩獵과 採取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貢納에는 알반이 저쿠(albna i jeku; 公課의 곡식), 알반이 리요(alban i liyoo; 公課의 꿀), 알반이 이한(alban i ihan; 公課의 소), 알반이 모린(alban i morin; 公課의 말), 알반이 답순(alban i dabsun; 公課의 소금), 알반이 아이신

57) 『滿文老檔』 1, pp. 41-42.

(alban i aisin; 公課의 金), 알반이 명군(alban i menggun; 公課의 銀)<sup>58)</sup>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貢納은 농경·수렵·채취 등에 의한 수확물의 일부를 공출하는 형태였던 것같고 요역은 築城등에 동원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던 것같.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貢納과 徭役은 그 부담율에서 니루이 하하와 비구성원 사이에는 그다지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들 사이의 차별성은 兵役의 부담에서 나타나리라 보인다. 그러므로 병역담당자의 양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만주족의 전형적인 전투대형은

행군하면 한 곳으로 행군하고 말에서 내리면 한 곳에서 차례로 말에서 내리고 공격하는 곳은 한 곳에 공격하며 길고 두터운 갑옷을 입은 사람(=uksin etuhe niyalma)은 창과 긴 칼을 가지고 앞에서 공격하고 가벼운 그물 갑옷을 입은 사람(=uksin etuhe niyalma)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뒤에서 쏘고 (파로) 뽑힌 강한 兵士(coohai niyalama)는 말을 타고 따로 지켜보고 있다 가 이기지 못하는 곳을 도와서 공격하여 어떤 전투도 이길 수 있었다.<sup>59)</sup>

에서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만주족의 兵士(cooha i niyalma, 초하이 니알마)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탄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옥신이 니알마(usin i niyama; 갑옷의 사람 =甲士) 혹은 모린이 니알마(morin i niyama; 말의 사람 =騎士, 騎兵), 또는 줄여서 옥신(uksin) 내지는 모린(morin)으로 칭하여졌으며 이들이 청초 군사력의 주력이다. 따라서 초하이 니알마라고 하는 경우 대개는 甲士, 騎兵을 의미한다.

하지만 甲士나 騎兵이 아닌 초하이 니알마가 있기도 하였으니 사르후(Sarhū) 전투에 관한 기록중에

58) 『滿文老檔』 2, p. 655; pp. 586-587; pp. 475-476; 『滿文老檔』 1, p. 383; 『滿文老檔』 2, p. 711.

59) 『滿文老檔』 1, pp. 50-51.

步兵(yafahan cooha)은 기다(Gida)봉우리의 꼭대기에 머물러있었다. 明(nikan)의 병사 역시 一軍이 사르후(Sarhū) 산의 꼭대기에 머물러있었다. 먼저 步兵(yafahan)을 지키러 갔던 400명의 騎兵(morin i coohai niyalma)은 明의 전위 대부대의 병사를 지나가게 하고 후위의 抄리로 돌진하여 사르후산의 어귀에서부터 (明의 병사들을) 배면서 자이피안(Jaifian)의 나루터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을) 죽였다. 그때부터 (우리의) 많은 병사들이 도착하였기 때문에 기린봉우리의 꼭대기의 步兵(yafahan cooha)이 明(nikan)의 병사를 아래쪽으로 공격하여 100이 부족하지 않게 죽였다.<sup>60)</sup>

라는 부분에 보이는 야파한 초하(yafahan cooha)가 그들이다. 본래 야파한 초하는 步兵을 뜻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다른 기록에서는

만주국(Manju Gurun)의 城을 쌓고 돌을 나르러 간 알반이 니알마(alban i niyalma)를 지키러 간 400명의 騎兵(morin i cooha)이 사르후라고 불리는 곳의 골짜기 어귀에 숨어 (明의) 전위 대부대의 병사를 지나가게 하고 후위를 배면서 돌진하여 자이피안의 나루터에 다다를 때까지 죽였다.<sup>61)</sup>

고 서술되어 있는 사실에서 보면 야파한 초하는 요역에 동원된 알반이 니알마를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사르후 築城에 동원된 알반이 니알마에 대해서 “우리의 城을 쌓고 돌을 나르러 간 (말을 타지 않고) 걸어다니는 알반이 니알마(=yafahan i alban i niyalma)에게는 무기가 없다”<sup>62)</sup> 면서 그들의 안전을 걱정하였다. 이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야파한 초하는 요역에 동원된 알반이 니알마이며 이들은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위급한 상황에서는 전투에 가담하기도 하였다는 사실

60) 『滿文老檔』 1, p.121.

61) 『大清滿洲實錄』, p.228의 b-c의 滿文. 漢文에서는 알반이 니알마를 ‘人夫’로 표기되어 있다. 『清太祖武皇帝實錄』에도 ‘人夫’으로 표기되어 있고, 『太祖高皇帝實錄』과, 『大清太祖高皇帝實錄』에는 ‘夫役’으로 표기되어 있다.

62) 『大清滿洲實錄』, p.227의 b-c의 滿文.

이다.

그러하다면 초하이 니알마는 대부분 甲士또는 騎兵을 의미하며 이들은 병역의 담당자이고 야파한 초하(步兵)는 요역의 담당자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출병이 糶의 획득의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甲士가 알반의 하나인 병역의 부담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록에서 알반이 니알마와는 구분하여 ‘초하이 니알마’로 지칭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초하이 니알마와 니루이 하하는 어떠한 관계였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니루의 비구성원에서 차출된 초하이 니알마의 실체를 규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둘 수 밖에 없다. 어쨌든 초하이 니알마는 대부분 니루이 하하에서 차출되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sup>63)</sup>.

니루이 하하는 요역과 貢納을 담당하는 알반이 니알마와, 그들과는 차별성을 지닌 병역을 담당하는 초하이 니알마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앞에서 언급한 이르건, 주선 등의 신분 에 대한 접근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입관전의 청조에서는 니루이 하하는 알반이 니알마와 초하이 니알마로 구별되며 니루의 비구성원도 알반이 니알마와 초하이 니알마로 구별되어 있었으므로 이르건 주선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집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 것인가를 검토함으로써 이들 신분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초하(cooha)는 없고 바이신 니알마(baisin niyalma), 말, 소, 포로가 많이 있었다”<sup>64)</sup>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초하이 니알마와 대비하여 바이신 니알마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였으므로 이 바이신 니알마도 고

63) 1621년경에 300명의 니루이 하하에서 150명을 동원하였고 비구성원인 漢人에게는 20명 중에서 1명을 동원하였으니 10:1의 비율이다(金斗鉉, 「遼東支配期 누르하치의 對漢人政策」). 하지만 비구성원 중에서 동원한 병력이 甲士 혹은 騎兵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비율도 잠정적인 것이다. 阿南惟敬은 甲士를 모두 니루이 하하 중에서 차출한 것으로 이해하였지만(阿南惟敬, 「清初の 甲士に關する一考察」) 비구성원에 대한 병역부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64) 『滿文老檔』 2, p. 246.

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니루가 보다 안정적인 알반의 확보를 위한 조직이라는 점과 니루에 대한 병역부담이 청조사회가 평창되면서 확대되었고 蒙古八旗와 漢人八旗도 청조사회의 확대와 더불어 성립하였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팔기조직의 확대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몽고팔기와 한인팔기의 성립 이전의 팔기는 만주족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sup>65</sup>. 이는 청조사회에서는 혈연적 성격의 종족에 의한 구분 보다는 그 사회에서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문제이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관념은 舊滿洲(fermanju)와 新滿洲(ice manju)의 개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sup>66</sup>. 그러므로 팔기제도와 청조사회의 변화는 서로간의 관련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 4. 맺음말

이상에서 입관전청조사회의 변화를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팔기제도의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상징하고 이를 위한 정치작업으로 지금까지의 팔기제에 대한 연구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몇가지의 접근방안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팔기제도의 정치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팔기 지배층의 정치권력의 기반이 팔기제도에 있었다는 점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後鎭의 건국을 전후한 시기의 니루개편을 통한 팔기제도의 성립에 주목하여 이를 통하여 누르하치가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였고 그것이 후금이라는 정치체의 출현의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상징하였다. 그리고 홍타이지의 권력장악도 팔왕합의제라는 분권적 형태를 극복하면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팔기 지배층의 정치적인 여러 관계가 각 구사의 장악에 기반을 두

65) 傅克東·陣佳華, 「八旗制度中的滿蒙漢關係」, 『滿族史研究集』.

66) 劉景憲·郭成康·劉建新, 「清太宗時期的‘新滿洲’問題」, 『歷史檔案』 81-4.



고 있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상정하였다.

다음으로는 팔기제도가 청조사회에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했는가 하는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팔기 지배층의 정치적 권력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한 접근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로 알반을 상정하여 알반은 병력과 노동력 그리고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 부담이며 니루는 이러한 알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직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팔기제도는 청조의 군사력과 경제력의 기반이 되는 사회조직이라는 점이 분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 팔기의 구성원인 니루이 하하는 어떠한 집단이었는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알반이 니알마를 실마리로 그들의 실체를 분석하고 이 알반이 니알마의 여러 형태중에서 니루이 하하가 도출될 수 있으리라고 추정하였다. 그리하여 니루이 하하는 초하이 니알마와 알반이 니알마는 대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니루이 하하를 이렇게 상정한다면 이르진, 주선 등의 신분에 관해서도 분석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팔기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경제적인 기반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팔기제도의 경제적 기반에 대해서는 旗地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연구가 있다<sup>67)</sup>.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팔기제의 구성원인 旗人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리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니루이 하하가 소유한 토지에 관해서라기 보다는 각 구사에게 소속된 토지에 대한 연구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니루의 물적 기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니루이 하하의 농업경영

67) 周藤吉之, 『清代滿洲土地政策の研究』, 東京, 河出書房, 1944; 周藤吉之, 『清代東アジア史研究』. 이외에도 劉家駒, 『清朝初期的八旗圍地』, 臺北, 國立臺灣大學, 1964; 金成基, 『清入關前八旗土地制度試探--兼論後金(清)社會性質』, 『清史論叢』(北京)1, 1979 등이 있다.

양태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특소(tokso;拖克索)<sup>68)</sup>이다. 이 특소는 두가지 형태가 있었으니 하나는 앞에서 인용한 경우<sup>69)</sup>처럼 개인에게 강하게 예속되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計丁授田策의 실패 이후에 시행된 編丁立莊策에 의해서 편성된 특소로 이러한 특소는 니루의 비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였다<sup>70)</sup>. 이렇게 보면 특소는 직접적으로 니루이 하하의 농업경영과는 관련이 없는 듯하다. 다만 전자의 특소의 경우 그 특소의 소유자와 니루이 하하와의 관계에서 팔기제와 관련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한인팔기 성립 이후의 후자의 특소의 처리는 니루이 하하의 농업경영의 해명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팔기제도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접근방안을 정리해보았다. 하지만 본고는 광범위한 자료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여 엄밀하게 논지를 전개시킨 것은 아니며 따라서 적지않은 잘못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고는 필자의 팔기제의 구조에 대한 구상을 정리하여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준비된 것이다. 보다 직접적인 자료분석과 엄밀한 논지전개를 통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약속한다.

68) 申忠一의 『建州紀程圖記』에서는 ‘農幕’으로, 李民煥의 『建州見聞錄』에서는 ‘農莊’으로 표기되어 있다.

69) 주 18)의 인용문.

70) 전자를 奴隸制 莊園, 후자를 農奴制 莊園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周遠廉, 『清朝開國史研究』; 閻崇年, 『努爾哈赤傳』, 北京, 北京出版社, 1983; 藤紹箴, 『努爾哈赤評傳』,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85; 魏千志, 「‘拖克索’淺論」, 『明清史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天津人民出版社, 1982). 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의 경우는 개인에게 예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후자의 경우는 니루의 비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즉, 특소의 구성원이 각기 별개의 집단이라는 사실이다.